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96
----------	-----

2016년 2월 2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6년 2월 2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에 대하여 바로 잡아 서울시 도로관리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제9조)

- 도로점용료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 상위법령인 도로법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례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어 적용에 혼란을 주므로 이를 바로 고치고자 함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점용료 감면의 한시 조항부분을 삭제함(별표1 비교)

- 2004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기존 2016.12.31.까지 한시법이었으나 2013년부터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함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상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서울시 도로관리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도로점용료 과오납금 반환 이자산정의 근거법령 변경에 대한 의견(안 제9조제3항)

○ 현행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에 근거하여 서울시 도로에 대한 점용료, 점용허가, 변상금, 과태료 및 각종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 제74조가 ‘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9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표] 과오납금 반환 이자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도로법 시행령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 (현행 조례 인용)
제73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u>고시이자율</u> 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u>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u> 를 말한다.

- 이는 서울시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들을 관리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던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행정자치부(지방규제혁신과-1407 (2015.4.10.))는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이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정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임.
- 따라서, 점용료 또는 과태료의 과오납반환금의 이자 산정기준이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려는 본 개정안은 법체계상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참고로,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간 반환이자 산정기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앞의 [표]와 같은데, 2016년 2월 15일 기준 고시이자율이 1.65%¹⁾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조례에 따른 이자율 연 3%²⁾와 비교하면 조례 개정 시 반환 이자가 현행 대비 약 45%가 감소되어 서울시 이자부담 역시 미미하게나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 신규취급액기준 COFIX(공시일: 2016.2.15.)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 점용료 산정기준 중 비고란의 한시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안 별표1)

- 현행 조례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비고란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2013년 5월 28일 특별법 개정³⁾에 따라 한시규정이 삭제됨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음.

[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한시조항 삭제

현행				개정안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료 (단위 : 원)
1. 영 별표3 제7호 에서 정한 점 용물	가로관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가로관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 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 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 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 비고 1. _____ _____ _____					

3)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945호 부칙 제2조 삭제).

<p>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 력을 가진다.</p>	<p>_____</p> <p>80/100을 경감한다.</p>
---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p> <p>① · ② (생략)</p> <p>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p>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p> <p>① · ② (생략)</p> <p>③ ----- -----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 -----.</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점용료의 종류</th> <th colspan="2">기준단위</th> <th rowspan="2">점용료 (단위 : 원)</th> </tr> <tr> <th>점용 단위</th> <th>기간 단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td> <td>가로관매대, 구두수선대</td> <td rowspan="5">점용면적 1㎡</td> <td>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td> </tr> <tr> <td>노점</td> <td>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td> </tr> <tr> <td>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td> <td>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td> </tr> <tr> <td>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td> <td>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td> </tr> <tr> <td>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td> <td>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td> </tr> <tr> <td rowspan="5">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td> <td>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td> <td rowspan="5">점용면적 1㎡</td> <td>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td> </tr> <tr> <td>주택</td> <td>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td> </tr> <tr> <td>전통시장내 시설 등</td> <td>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td> </tr> <tr> <td>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td> <td>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td> </tr> <tr> <td>기타</td> <td>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td> </tr> </tbody> </table>	점용료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관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점용료의 종류</th> <th colspan="2">기준단위</th> <th rowspan="2">점용료 (단위 : 원)</th> </tr> <tr> <th>점용 단위</th> <th>기간 단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td> <td>가로관매대, 구두수선대</td> <td rowspan="5">점용면적 1㎡</td> <td>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td> </tr> <tr> <td>노점</td> <td>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td> </tr> <tr> <td>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td> <td>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td> </tr> <tr> <td>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td> <td>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td> </tr> <tr> <td>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td> <td>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td> </tr> <tr> <td rowspan="5">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td> <td>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td> <td rowspan="5">점용면적 1㎡</td> <td>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td> </tr> <tr> <td>주택</td> <td>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td> </tr> <tr> <td>전통시장내 시설 등</td> <td>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td> </tr> <tr> <td>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td> <td>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td> </tr> <tr> <td>기타</td> <td>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td> </tr> </tbody> </table>	점용료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관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료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관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료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관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p>※ 비고</p> <p>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p>	<p>※ 비고</p> <p>1. ----- ----- -----80/100을 경감한다.</p>																																																												